|  |  |  |
| --- | --- | --- |
|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및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반포와 관련한 공고**  환경보호부 공고 2011년 제23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수입 관리를 한층 더 완벽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퇴치법》에 의거 당 부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사항과 관련한 공고》(원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57호), 《휴지 수입 심사허가 및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원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61호) 및 《수입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를 보강하는 것에 대한 통지》(環辦 [2006] 89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첨부문건: 1. 원료용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2.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2011년 3월 11일  주제어: 환경보호, 오염방지, 고체폐기물, 폐 규소부스러기, 공고  발송: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료우허(遼河)보호구관리국, 중일우호한경보호센터,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첨부문건 1: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과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한 고체폐기물의 수입 환경보호 관리에 적용한다.  특정 부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해 전문적인 환경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가공 이용기업의 환경보호 요구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 이용은 아래의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갖추고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범위가 있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2)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 이용 장소, 시설, 장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가 갖추어 졌으며,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표준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수입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제도,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 구축을 포함하는 필요한 제도와 조치가 갖추어 지고, 특별부문 또는 전직인원을 배치하여 본 단위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관련 황경보호 및 오염방지 업무를 검사, 독촉하게 하며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은 국가의 관련 정책법규, 표준규범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허가 등을 전개해야 한다.  (5) 자영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기타 기업에 수입대행을 의뢰한 경우 그가 의뢰한 대리기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수하인 등록등기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가공이용기업은 상응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중에 기재된 "그가 대리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하며, 가공무역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공구 내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6) 수입을 신청하는 고체폐기물의 물량은 가공이용 능력과 오염방지 능력에 어울려야 하며, 수입세관은 인근원칙과 국가의 통관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가공이용기업 및 그 법정대표자 또는 그가 의뢰한 수입 대리기업 및 법정대표자는 최근 2년 내에 아래의 불법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  ① 수입금지 고체폐기물을 수입  ②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  ③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신청  ④ 사기 또는 기타 부당수단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득  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  (8) 최근 1년 내에 환경보호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한 아래의 행위가 없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역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 또는 총량통제요구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행위  ② 가공 이용하는 수입 고체폐기물이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 또는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를 어긴 행위  ③ 생산과장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 및 수입폐기물 중의 불순물에 대해 무해화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환경모니터링 기록 또는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을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고를 할 때 허위 날조를 한 행위  ⑤ 기타 환경보호, 세관, 검사검역 등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  (9)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규획 및 "구역내 관리"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신청, 심사허가 및 감독관리  (1) 신청  ① 신청단위(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서면 신청보고서  나. 신청표(붙임 1 참조)  다. 환경보호보고서(붙임 2 참조). 이 규정을 반포 시행한 후 처음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가공이용기업은 기업 환경보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붙임 3 참조). 여기에는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제시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상황표(붙임 4 참조,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에 적용), 또는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 및 1차 심사표(붙임 5,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에 적용)가 포함된다.  ② 최근 3년 내에 같은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수령한 적이 있는 단위로서 가공이용 장소, 시설, 장비 및 부대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 관련 환경관리 제도 또는 인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평가 및 검수 등 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상기 미변경 사항은 신청표의 비고난에 먼젓버 신청일자와 미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 중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이 환경보호부에 신청한다.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 중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이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서면 심사와 실사 등 방식을 통해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지를 1차 심사하고 아울러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붙임 5 참조), 기업의 관련 신청서류 및 신청서류 일괄리스트(별첨 6 참조)를 공문형식으로 환경보호부에 송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차기 연도의 고체폐기물 수입신청을 수리하며, 원칙상 당 연도 고체폐기물의 수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기술심사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부 고체폐기물관리센터(이하 고체폐기물센터라 함)에 위탁하여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기술심사를 하게 한다.  고체폐기물센터는 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서면심사 또는 실사 등 방식을 통해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기술심사 상황을 공시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시기간은 3일 근무일로 한다. 공중의 의견을 받은 후 환경보호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공시기간에 고체폐기물센터는 기술심사 상황과 공시 상황을 환경보호부에 송부한다.  (3) 심사허가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센터의 기술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10일 근무일 내에 고체폐기물 수입신청을 심사 결정한다.  (4) 허가증 발급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센터에 위탁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통일적으로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우송하게 하며,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이를 대리 발급한다.  (5) 감독 관리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감독관리 상황표를 발급하여 신청단위의 불법행위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의거로 한다.  (6) 자료보존  수입 고체폐기물의 페이퍼 신청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7) 심사 과정에서 실사, 공시 및 공중의 의견에 대한 심사확인 시간은 심사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변경, 분실 및 연기처리  (1) 변경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의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수령하고 원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2) 분실  가공이용기업이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 또는 환경부류 신문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보호부,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및 허가증에 기재된 수입 통관세관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의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가공이용기업의 분실보고서, 작폐성명을 게재한 신문샘플 등 자료에 근거하여 이미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후 원 증서를 취소하거나 말소하고 신 증서를 교체 발급하며, 아울러 신 증서 비고난에 원 증서번호와 "증서 분실 교체"란 문구를 기재한다.  (3) 연기  사유로 인해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유효기간이 만기되는 30일 전에 원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이미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후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아울러 신 증서의 비고난에 원 증서번호와 "연기 사용"이란 문구를 기재한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1회 연기 가능하고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기 허가물량은 차기 연도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허가물량에 계상한다.  5. 경영상황 및 연도 환경보호보고서 비안(備案)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기업은 매분기 첫 달의 15일 전에 지난 분기의 고체폐기물 경영상황을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보고서(보고서 양식은 붙임 8 참조)를 첨부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및 현급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부본을 송부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기업은 매년 1월 15일 전에 직전 연도 기업 환경보호보고서(직전 연도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보고서를 첨부, 붙임 8 참조)를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시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및 현급 지방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일괄한 후 매년 3월 31일 전에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붙임 9를 참조한다.  붙임 1: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4296585484.doc>  붙임 2: 원료용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 환경보호보고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57547.doc>  붙임 3: 관련 증명자료에 대한 설명  모든 증명자료는 반드시 기업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이 사본은 원본과 동일함"을 서명하고 일자를 밝혀야 한다. 관련 증명자료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과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범위가 있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연차검사를 거친 유효한 영업집조 부본,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일반납세자 자격증서(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감이 찍힌 국세 세무등기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가공이용 신청에 필요한 수입 고체폐기물 장소, 시설, 설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시설과 조치가 갖추어 졌으며,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표준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하면, 신청서에 기입한 장소(공장구역 입구 및 공장 간판, 공장구역 개황, 원료와 완제품 보관장소, 가공이용 장소 포함), 시설, 설비, 오염방지 시설 장비의 칼라사진과 문자설명이 있어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 및 그 허가문건과 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허가문건 사본, 수입 고체폐기물을 이용하여 시험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시험생산 허가문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관련 제도와 조치가 갖추어 져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제도와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특별부문 또는 전직인원을 배치하여 본 단위에서 수입한 원료용 고체폐기물 관련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업무를 검사, 독촉하고 관철하며,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은 국가의 관련 정책, 표준규범의 규정을 숙지하고 법에 따라 청정 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등이 포함된다.  예하면, 관련 경영상황 기록부 샘플, 환경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제도문건, 그리고 국가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고체폐기물의 수입 방지 관리제도와 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가공이용기업의 경영상황 기록부는 사실대로 매회 고체폐기물 수입에 사용한 허가증번호, 통관신고일자, 수입금액, 수입 통관세관, 수입물량, 창고 입고일자와 물량, 운송단위 명칭과 연락방식, 가공처리 또는 이용한 수입 폐기물의 물량, 시간, 제품의 생산량 및 흐름,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정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참조) 및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의 명칭, 물량 및 이용과 처리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은 각기 기록해야 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앞의 기록에는 취급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 고체폐기물의 수입, 운송, 제품의 판매,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과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 이용처리 등 단계의 원시증빙, 예를 들면 계약서, 지불어음, 세금계산서, 납세신고서, 세금납부서(완세증빙) 등은 경영상황 기록부의 별첨으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경영상황 기록부 참고양식은 붙임 7일 참조하며, 기업은 실제 상황에 비추어 수정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되 상술한 원칙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환경모니터링 방안은 모니터링 지표와 빈도, 그리고 응급 모니터링 대비책을 확정해야 하며, 그중 특정 오염물은 매분기 최소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구역 내 관리"를 실시하는 구내 가공이용기업은 특정 오염물에 대해 매 6개월에 최소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격증명과 증서 소지 근무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계기의 유지보수와 교정 방안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교정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외부에 의뢰 시에는 위탁계약서와 모니터링 위탁기구의 검측 자격증명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본 단위에 환경보호 부문직책과 검정기준 관련 규장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의 환경보호 교육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  《청정생사 촉진법》 제28조와 《청정생산 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16호) 제8조에 의거하여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허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청정생산 심사 평가검수에 통과된 증명문건과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아직 평가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생산 심사보고서,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한 평가검수 신청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자영 수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타 기업에 수입을 의뢰한 경우 수탁 수입 대리기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 자격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가공이용은 상응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에 나열한 "그가 대리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하며, 가공무역 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공구 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자영 수입은 가공이용기업의 유효한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신고 등록등기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기업에 수입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 대리기업의 연차검사에 통과된 영업집조 부본,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신고 등록등기증서 및 수입 대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 대리계약서에는 다음의 조항을 약정해야 한다. 1. 수입 고체폐기물의 종류, 물량, 가격과 품질 요구가 있어야 한다. 2. 수입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의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고체폐기물 반송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수입 고체폐기물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공무역 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 사본 또는 그가 소재한 수출가공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 또는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서.  자동허가부류의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이용 장소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관리상황에 근거하여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붙임 4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이용 장소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서(붙임 5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7. 기타 본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건과 자료.  붙임 4: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8236.doc>  붙임 5: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 및 1차 심사의견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1702.doc>  붙임 6: 성(구, 시) 수입 제한부류 고체폐기물 신청서류 일괄리스트(\_\_\_년 제\_\_회)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7319.doc>  붙임 7: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부 참고양식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9635.doc>  붙임 8: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보고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7130.doc>  붙임 9: 성(구, 시) 연간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 일괄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35697.doc>  첨부문건 2: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한 상품코드는 2804619011, 2804619091이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명칭이 "폴리실리콘 폐 부스러기"와 "기타 폐 규소부스러기"인 수입 고체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가공이용기업의 유형  아래 유형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급 단결정 규소제품 생산기업(반도체 자재 제조기업)  (2) 단결정 규소 태양에너지 기업.  상술한 기업에는 단순히 단결정 규소(개량 지멘스공법, 실리콘공법 또는 기타 공법 채용)를 생산하는 기업과 폐 규소부스러기 분쇄, 박리, 분리, 세척 등 초보적인 처리능력을 갖추었으나 결정체 규소제품의 생산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공이용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에 부합되고 부록에 나열한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 장소, 시설, 설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를 갖추고 동시에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정에 합격되어야 하며, 자영으로 폐 규소부스러기를 수입해야 한다.  4. 기타 규정  신청서류와 관련 증명자료 요구, 신청 및 심사허가 절차, 변경 및 분실 처리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심사표(부록 참조, 유효기간은 3년)를 첨부해야 한다.  부록: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 기업 환경보호 심사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43088.doc> |  | **关于发布《进口可用作原料的**  **固体废物环境保护管理规定》和《进口硅废碎料环境保护**  **管理规定》的公告**  环境保护部公告2011年第23号  　　为进一步完善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进口管理工作，依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我部制定了《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管理规定》、《进口硅废碎料环境保护管理规定》。现予以公布，自2011年6月1日起施行。  　　《关于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申请事项的公告》（原国家环境保护总局公告2007年第57号）、《关于进口废纸审批和管理有关事项的公告》（原国家环境保护总局公告2007年第61号）和《关于加强限制进口类废物审批管理的通知》（环办〔2006〕89号）同时废止。  　　附件：1.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管理规定  　　　　　2.进口硅废碎料环境保护管理规定  　 　二○一一年三月十一日  主题词：环保 污防 固体废物 硅废碎料 公告  发送：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局，辽河保护区管理局，中日友好环境保护中心，发展改革委、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  附件一：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  **管理规定**  　　一、适用范围  　　本规定适用于列入《自动许可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和《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中固体废物进口的环境保护管理。  　　进口特定类别固体废物环境保护有专门规定的，从其规定。  　　二、加工利用企业环境保护要求  　　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应当符合以下环境保护要求：  　　（一）属于依法成立的并具有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和固体废物加工利用经营范围的企业法人。  　　（二）具有加工利用所申请进口固体废物的场地、设施、设备及配套的污染防治设施和措施，并符合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规范的要求。  　　（三）符合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有关规定。  　　（四）具有防止进口固体废物污染环境的相关制度和措施，包括建立了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的经营情况记录制度、日常环境监测制度；设置专门部门或专人负责检查、督促、落实本单位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相关环境保护和污染防治工作，相关工作人员和管理人员应当掌握国家相关政策法规、标准规范的规定；依法开展了清洁生产审核等。  　　（五）自营进口的，应当具有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资格；委托其他企业代理进口的，所委托的代理进口企业应当具有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资格，且加工利用企业为相应《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证书》中列明的“所代理的加工利用企业”；以加工贸易方式进口固体废物的，应当位于出口加工区内，或者已获得商务主管部门签发的有效的加工贸易业务批准文件。  　　（六）申请进口固体废物数量与加工利用能力和污染防治能力相适应；进口口岸符合就近原则和国家有关口岸管理规定。  　　（七）加工利用企业及其法定代表人或者所委托的代理进口企业及其法定代表人，近两年内没有以下违法行为记录：  　　1.进口属于禁止进口的固体废物；  　　2.未经许可擅自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  　　3.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固体废物进口许可证；  　　4.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固体废物进口许可证；  　　5.转让固体废物进口许可证。  　　（八）近一年内没有以下违反环境保护等法律、法规的行为记录：  　　1.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或者总量控制要求排放污染物；  　　2.所加工利用的进口固体废物不符合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等强制性要求；  　　3.生产过程产生的固体废物以及进口固体废物中的夹杂物未进行无害化利用或者处置；  　　4.环境监测记录或者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未按规定向环境保护部门报告，或者在报告时弄虚作假；  　　5.其他违反环境保护、海关、检验检疫等法律、法规的行为。  　　（九）从事《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内固体废物加工利用的企业，应当符合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有关规划以及“圈区管理”等要求。  　　三、申请、审批和监督管理  　　（一）申请  　　1.申请单位（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应当提交下列材料：  　　（1）书面申请报告。  　　（2）申请表（见附一）  　　（3）环境保护报告（见附二）。本规定发布实施后首次申请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加工利用企业应提供企业环境保护报告。  　　（4）符合环境保护要求的证明材料（见附三）,包括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监督管理情况，出具的对加工利用企业监督管理情况表（见附四，适用于自动许可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或者对加工利用企业监督管理情况及初审意见表（见附五，适用于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  　　2.近3年内领取过相同种类固体废物的进口许可证的单位，加工利用场地、设施、设备及配套的污染防治设施和措施，相关环境管理制度或人员未发生变化的,并免于提交相应证明材料；按照相关法律规定，不需要重新履行环评和验收等手续的，免予提交有关符合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有关规定的证明材料。上述未变化事项，应当在申请表中备注栏注明上次申请日期及未发生变化的事项。  　　3.申请《自动许可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中固体废物进口的，由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向环境保护部提出申请。  　　申请《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中固体废物进口的，由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向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通过书面审查和实地核查等方式对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申请进行初审，并自受理之日起20个工作日内，将监督管理情况及初审意见（见附五）、企业相关申请材料和申请材料汇总清单（见附六）以公函形式报送环境保护部。  　　每年11月1日至12月31日可受理下一年度固体废物进口申请，原则上不再受理当年固体废物进口申请。  　　（二）技术审查  　　环境保护部委托环境保护部固体废物管理中心（以下简称“固废中心”）受理申请材料并进行技术审查。  　　固废中心应当自接到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通过书面审查或实地核查等方式对申请材料进行技术审查，并将技术审查情况予以公示，征求公众意见，公示期为3个工作日。对公众意见，由环境保护部组织进行核实。  　　公示期满，固废中心将技术审查情况和公示情况报送环境保护部。  　　（三）审批  　　环境保护部根据固废中心的技术审查意见，在10个工作日内对进口固体废物的申请进行审定。  　　（四）许可证的颁发  　　环境保护部委托固废中心将固体废物进口许可证统一邮寄至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由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代为发放。  　　（五）监督管理  　　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对本地区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进行监督检查，并及时出具监督管理情况表，作为审查申请单位是否有违法行为的重要依据。  　　（六）资料保存  　　进口固体废物纸质申请材料的保存期限为三年。  　　（七）审查过程中，实地核查、公示及对公众意见的核实所需时间不计入审批时限。  　　四、变更、遗失和延期处理  　　（一）变更  　　固体废物进口许可证上载明的事项发生变化的，加工利用企业应当按照原申请程序和要求重新申请领取固体废物进口许可证，并交回原证。  　　（二）遗失  　　加工利用企业遗失所申领的固体废物进口许可证，应当在全国性的综合或环境类报纸上刊登作废声明，并向环境保护部、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及许可证证面注明的进口口岸地海关书面报告挂失。  　　在有效期内需要重新办理固体废物进口许可证的，加工利用企业应按原申请程序和要求重新申请固体废物进口许可证。环境保护部根据加工利用企业的遗失报告、声明作废的报样等材料，扣除已使用的数量后，撤销或者注销原证并换发新证，并在新证备注栏注明原证证号和“遗失换证”字样。  　　（三）延期  　　固体废物进口许可证因故在有效期内未使用完的，加工利用企业可在有效期届满30日前，按原申请程序和要求提出延期申请，并交回原证。  　　环境保护部扣除已使用的数量后，重新签发固体废物进口许可证，并在新证备注栏注明原证证号和“延期使用”字样。  　　固体废物进口许可证只能延期一次，延期最长不超过60日。延期批准数量计入下年度固体废物进口许可证的批准数量。  　　五、经营情况和年度环境保护报告备案  　　进口固体废物的加工利用企业应当于每季度第一个月15日之前将上季度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向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并附报表（报表样式见附八），并抄送所在地设区的市级和县级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进口固体废物的加工利用企业应当于每年1月15日之前将上年度企业环境保护报告（并附上年度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经营情况报表，见附八），向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并抄送所在地设区的市级和县级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将有关情况汇总后于每年3月31日前报环境保护部。报告样式见附九。  附一：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进口许可证申请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4296585484.doc>  附二：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环境保护报告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57547.doc>  附三：有关证明材料的说明  　　所有证明材料必须加盖企业公章。提交复印件的，须在复印件上签署“此复印件与原件相同”字样，并注明日期。有关证明材料说明如下：  　　一、属于依法成立的并具有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和固体废物加工利用经营范围的企业法人。  　　如：加工利用企业年检有效的法人营业执照副本、组织机构代码证书副本、一般纳税人资格证书（或者加盖“增值税一般纳税人”字样的国税税务登记证）的复印件。  　　二、具有加工利用所申请进口固体废物的场地、设施、设备及配套的污染防治设施和措施，并符合国家或者地方环境保护标准规范的要求。  　　如：申请表填报的场地（包括厂区入口及厂牌、厂区概览、原料和成品贮存场地、加工利用场地）、设施、设备、污染防治设施设备的彩色照片及文字说明。  　　三、符合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有关规定。  　　如：加工利用企业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及其批准文件和项目竣工环境保护验收批准文件的复印件；需要进口固体废物试生产的企业，应当提供试生产批准文件的复印件。  　　四、具有防止进口固体废物污染环境的相关制度和措施，包括建立了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的经营情况记录制度、日常环境监测制度；设置专门部门或专人负责检查、督促、落实本单位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相关环境保护和污染防治工作，相关工作人员和管理人员应当掌握国家相关政策法规、标准规范的规定；依法开展了清洁生产审核等。  　　如：有关经营情况记录簿样本、环境监测等环境管理制度文本，以及相关防止进口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的固体废物的管理制度和措施。  　　加工利用企业经营情况记录簿，应如实记载每批进口固体废物所使用的许可证号、报关日期、进口金额、进口口岸、进口数量，到厂日期和数量，运输单位的名称和联系方式；加工处理或者利用进口废物量、时间、产品产量和流向；进口固体废物中夹杂物（定义见《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以及生产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的名称、数量及利用和处置情况；进口固体废物中夹杂物和生产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的记录应当分别填写，确实难以区分的，应当说明理由；上述记录应当由经办人签字。有关固体废物进口、运输，产品销售，进口固体废物中的夹杂物和生产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利用处置等环节的原始凭证，如合同、付款单据、发票、纳税申报表、税收缴款书（完税凭证）等，应作为经营情况记录簿的附件保存备查，保存期为2年。经营情况记录簿参考样式见附七，企业可根据实际情况予以修改或调整，但应满足上述基本原则和要求。  　　环境监测方案应确定监测指标和频率，以及应急监测预案，其中特征污染物应当每季度至少监测一次；实行“圈区管理”的区内加工利用企业，特征污染物应当每六个月至少监测一次。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企业应当自行监测或委托监测；自行监测的，应当出具监测资质证明和持证上岗证，制定监测仪器的维护和标定方案，定期维护，标定并记录结果；委托监测的，应当提供委托合同和委托监测机构的监测资质证明文件。  　　本单位有关环境保护岗位职责与考核标准的规章制度；相关工作人员和管理人员的环保培训材料等。  　　依据《清洁生产促进法》第二十八条和《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国家发展改革委、原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16号）第八条，应当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应提供通过清洁生产审核评估验收的证明文件的复印件，若尚未进行评估验收，则提供清洁生产审核报告、向环保部门递交的评估验收申请及回执的复印件。  　　五、自营进口的，应当具有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资格；委托其他企业代理进口的，所委托的代理进口企业应当具有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资格，且加工利用企业为相应《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证书》中列明的“所代理的加工利用企业”；以加工贸易方式进口固体废物的，应当位于出口加工区内，或者已获得商务主管部门签发的有效的加工贸易业务批准文件。  　　如：加工利用企业自营进口的，应当提供加工利用企业有效的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证书、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的复印件。  　　委托其他企业代理进口的，提供代理进口企业年检有效的工商营业执照副本、组织机构代码证书副本、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内收货人注册登记证书、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以及代理进口合同的复印件。代理进口合同中，应当订明以下条款：1.有关进口固体废物的种类、数量、价格和质量要求；2.有关进口固体废物必须符合我国进口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以及对不符合环境保护控制标准固体废物退运责任的规定；3.有关不得将所进口固体废物弃货以及不得转让固体废物进口许可证的规定。  　　申请以加工贸易方式进口固体废物的，提供商务主管部门签发的有效的加工贸易业务批准文件复印件或者所处出口加工区管理机构出具的加工贸易业务证明。  　　六、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出具的对加工利用企业监督管理情况表或监督管理情况及初审意见表。  　　进口自动许可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提供加工利用场地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监督管理情况，出具的对加工利用企业监督管理情况表（见附四）。  　　进口限制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提供加工利用场地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监督管理情况，出具的对加工利用企业监督管理情况和初审意见表（见附五）。  七、其他证明符合本规定的文件和材料。  附四：关于对申请进口自动许可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监督管理情况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8236.doc>  附五：关于对申请进口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监督管理情况及初审意见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1702.doc>  附六：省（区、市）限制进口类固体废物申请材料汇总清单（　　 年第 批）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7319.doc>  附七：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经营情况记录簿参考样式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9635.doc>  附八：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经营情况报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7130.doc>  附九：省（区、市）年进口固体废物经营情况汇总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35697.doc>  附件二：  **进口硅废碎料环境保护管理规定**  　　一、适用范围  　　本规定适用于列入《限制进口类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目录》的商品编码为2804619011、2804619091，固体废物进口许可证名称为“多晶硅废碎料”和“其他硅废碎料”的进口固体废物的管理。  　　二、加工利用企业类型  　　以下类型之一的企业可以申请进口硅废碎料加工利用：  　　（一）电子级单晶硅产品生产企业（半导体材料制造企业）；  　　（二）晶体硅太阳能光伏企业。  　　上述企业不包括只生产多晶硅（采用改良西门子法、硅烷法或者其他方法）的企业以及只具备硅废碎料破碎、剥离、分拣、清洗等初步处理能力，但不具备晶体硅产品生产能力的企业。  　　三、加工利用企业环境保护要求  　　应符合《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管理规定》，具有附录所列的加工利用进口硅废碎料的场地、设施、设备及配套的污染防治设施和措施并经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自营进口硅废碎料。  　　四、其他规定  申请材料及相关证明材料要求、申请和审批程序、变更和遗失处理，应执行《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管理规定》，并附所在地省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出具的考核表（见附录，有效期为三年）。  　　附录：进口硅废碎料加工利用企业环境保护考核表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43088.doc> |